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1차) 공고

지역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사업」 지원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 도내 혁신성장산업 집중육성을 위하여 연관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상용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사업내용

사업명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사업
사업내용	• 혁신성장산업 분야 도내기업의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지원규모	• 1차 20개사 내외
지원유형	① 투자유치형 : 자유주제로 신청하되, 투자유치계약서 또는 MOU 제출 필수 ② 자유공모형 : 자유주제로 신청 ③ 구매조건부 : 자유주제로 신청하되, 구매계약서 제출 필수 ④ 민간투자형 : 자유주제로 신청하되,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지원분야	• 혁신성장산업 및 전북형 뉴딜(디지털, 그린), 국가전략기술
특이사항	• 과제당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
관리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단 R&D지원팀

2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투자유치	자유공모형	구매조건부	민간투자R&D
개요	투자유치 계약 또는 MOU 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고도화 기술개발 공정개발 물류기술개발 지원	기 구축된 도내 혁신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등으로부터 지원금 이상의 구매확약서(P/O)를 받은 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상용화 촉진 지원	VC 또는 AC로부터 투자 계약을 성사한 기업을 대상으로 원천기술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원
작성방법	<u>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되, 투자유치 계약서 또는 MOU 제출 필수</u>	<u>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u>	<u>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되, 구매확약서(지원금액 이상) 제출 필수</u>	<u>자유주제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되, 투자계약서(지원금액 이상) 제출 필수</u>
지원금액(과제당)	150백만원 이내 ※레드바이오 분야 300백만원/년 이내	100백만원 이내	150백만원 이내	15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1년 (12개월) ※레드바이오 분야 최대 3년 (36개월, 연차별 신규평가)			
신청자격	[[참고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참조]			
추진방식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 주도 컨소시엄 또는 기업 단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1) 기업주도 컨소시엄 방식 : 주관 (도내소재 기업) + 참여(도내소재 기업, 도내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참여1 일 때, 도비지원금 비율은 주관 60% 이상, 참여 40% 이하 - 주관 + 참여1 + 참여2 일 때, 도비지원금 비율은 주관 40% 이상, 참여 각각 30% 이하 <p>2) 기업 단독 방식 : 주관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한 기업)</p> </div>			
도비원천	총사업비의 80%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기업주도 컨소시엄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기업 단독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기술료 징수(정액기술료)	<p style="text-align: center;">총 도비지원금의 10%(주관, 참여 기업)</p> <p style="text-align: center;">※ 대학, 연구기관 기술료 징수 제외</p>			

※ 유형별 선정건수, 지원금액은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예정

3

지원 분야

구분	지원 분야		
혁신 성장산업	·에너지신산업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 ESS 등	
	·미래 수송·기계	· 자동차, 조선해양, 농건설기계·뿌리 등	
	·첨단융복합소재	· 탄소, 섬유, 방사선, 전자소재·부품 등	
	·라이프케어	· 제약, 뷰티, 의료기기 등	
	·스마트 농생명	· 종자·미생물, 식품, 농자재·시스템, 동물사료·의약품 등	
	·정보통신융합	· 콘텐츠, ICT·SW 등	
국가 전략기술	혁신선도	미래도전	필수기반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양자 ·첨단로봇·제조
전북형뉴딜	·D.N.A 융합 전북경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스마트 농생명 밸리 20		·ICT융합 스마트관 스마트농생명 플랫폼 등
	·디지털 문화·관광 실감형 콘텐츠		·홀로그램 문화유산 스마트관광 실감형 콘텐츠 등
	·안전하고 더 편리한 전북도민의 삶터		·스마트시티, 드론기반 지역정보 플랫폼 등
	·신재생에너지 1번자에너지 전환 확대		·해양풍력, 그린수소 등
	·그린 모빌리티 산업경제 전환		·수소상용차, 전기차 스마트팩토리 등
·천년산하 생태백산·그린바이오		·생태백신, 그린인프라 등	

4

신청자격 ※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이거나, 도내에 공장**, 본사,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5가지 요건중 1가지 이상 충족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단, 투자유치형 중 레드바이오 분야는 사업기간내 도내 사업장 확보로 유예하여 신청 가능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단, 기업 단독 추진방식은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한 기업만 가능, 단 투자유치형, 민간투자R&D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참여기관 : 도내 소재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 *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장(본사, 공장, 사업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

□ (자유공모형, 구매조건부 - 주관 및 참여) 신청 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만 주관 및 참여기업으로 신청이 가능
 - * 개인사업자, 1년미만 창업기업도 포함

□ (구매조건부) 신청 조건 및 우대사항

- 구매조건부 신청 시 지원금 이상 금액의 구매확약서 필수 제출
- 구매확약서로 인정 가능한 증빙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 외국어로 된 구매확약서는 번역본 첨부
- 구매확약서 기재시 우대사항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명기, 신청기업과 수요처간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제품 또는 기술 개발 담당자 지정여부,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

□ (투자유치형) 신청 조건

- 2021.01.01.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도내 기초지자체와 투자유치 계약 또는 업무협약(MOU)가 체결된 기업

□ (민간투자R&D) 신청 조건

- 2021.01.01. 이후 엑셀러레이터(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또는 벤처캐피탈(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록)로부터 투자계약을 실시한 기업

5

지원제외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의 R&D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를 제한함
 - ①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돋움·도약·선도)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제외
 - ② 본 사업으로 3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선정지원받은 기업 지원제외(졸업제 적용)
 - ③ 본 사업 '23년도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 기업은 지원 제외(종료과제는 신청가능)
-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이 최근 2년(2021년~2023년) 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CB, BW는 부채에서 제외) 이상인 경우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월만 적용)

[지원가능여부 예시]

구 분	유동비율		부채비율		지원여부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A기업	49%	47%	300%	400%	X
B기업	55%	60%	550%	650%	X
C기업	20%	75%	600%	320%	O
D기업	100%	40%	400%	540%	O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등기 임원 예외)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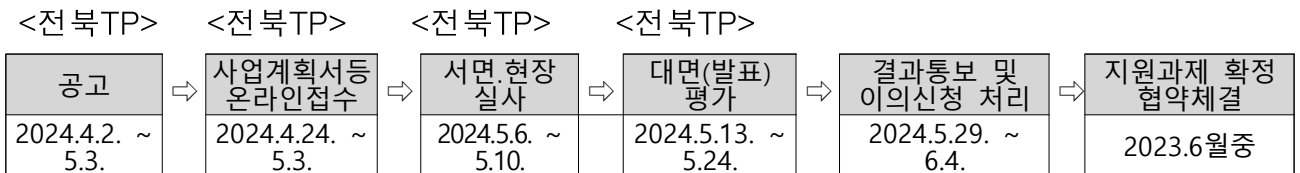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과제 3개, 연구개발과제 5개) 참여를 제한함(3책 5공 적용)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 4. 24.(수) ~ 2024. 5. 3.(금) 16: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http://rnd.jbtp.or.kr>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 ※ 홈페이지 회원가입/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
 -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전북테크노파크 R&D관리 홈페이지] 참조
 -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 평가절차 및 일정



※ 법정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될 경우, 현장실사는 생략될 수 있으며, 대면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 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http://rnd.jbtp.or.kr> 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 지역R&D 공고에서 확인

N O	제출서류	투 자 유치형	자 유 공모형	구 매 조건부	민투자 R & D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	○	○	○	주관
2	참여의사확인서 각1부	○	○	○	○	주관 참여
3	최근 2년간('21~'23) 결산확정 재무제표 각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	○	주관 참여
4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 공장 미등록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	○	주관 참여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	○	주관 참여
6	신청자격 자기진단서 각1부 ※ 주관 및 참여 각각 제출	○	○	○	○	주관 참여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	○	○	주관 참여
8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	○	주관 참여
9	(구매조건부 신청시) 구매확약서***	-	-	○	-	주관
10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 ※ 비영리기관은 해당 없음	-	○	○	-	주관 참여(해당시)
12	투자유치 확인서류 - 계약서 또는 MOU	○	-	-	-	주관
13	투자계약서 및 납입확인서류	-	-	-	○	주관

- * '23년도 재무제표 경우,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또는 결산확정)된 자료 제출
- 단, '23년도 이후 설립기업은 접수마감기준 '23년 재무제표(날인본)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 * 본사가 도외일 경우, 입주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 구매확약서(P/O) 기재사항 : 주문수량, 주문금액, 개발품목명, 계약기간(Delivery date) 등

관련문의 :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단 R&D지원팀 김성용 선임연구원

(☎ 063-260-9332, e-mail : sykim@jbtp.or.kr)

7

(도비) 출연금 지원기준 등

출연금은 참여기업 유무, 기업유형 등에 따라 사업비의 80%이내로 하고,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이상을 원칙함 (단, 기업 단독의 경우 민감부담 현금 비율 20%이상)

※ (예시) 도지원금 100백만원(80%), 민간부담금 25백만원(20%)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25백만원의 10%인 2.5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현물 22.5백만원 이내)

8

평가기준

사업추진체계, 기술성, 사업성 및 계획의 적정성, 기여도 등

※ 신규 신청하는 주관기관 우대, '23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 수혜기업 가점

9

추진절차



- 신규고용 : 지원금 1.5억당 1명 이상 신규고용 의무(최소 1명 이상, 소수점은 사사오입)
 - 공고일 6개월 이내(또는 사업기간내) 신규채용 연구원에 대해 1인당 주관기관 인건비 24.7백만원이내로 사업비(현금)에 산정 가능
 - ※ 협약 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 시 참여인력변경 보고를 한 경우만 인건비 지원 가능
 - ※ 학력제한 없음
(단, 현금 인건비 지급 연구원일 경우,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노트에 성실히 기재해야 되며, 연구노트 불성실 작성 및 미작성시 인건비 전액 불인정)
 -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시 인건비 지급불가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불가
 - 외국인 채용 : 주관 및 참여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참여인력으로 등재시 인건비 지급 불가. 단, 여비는 지급가능
- (공통)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주관/참여기관 참여 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함
 -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지 연구노트 작성 확인예정
- 선정 후 협약대상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투자유치형 및 민간투자R&D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조건 한시적 면제
- 연구과제의 정량목표는 추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신규고용 의무조건' 불충족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성실실패'이하로만 평가함)
- 구매조건부 경우, 최종평가 이후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조사 시, 선정당시 제출한 구매확약서에 기재된 납품(계약)기한안에 매출성 과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도출연금의 10%를 납부
 -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기술료 납부 통지 후 1개월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이미 개발된 R&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책임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제도를 폐지함
 - 컨소시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만 구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R&D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D사업 공동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육성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규정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참고] 사업비 편성 기준

세 목	내 용
인건비	<p><input type="checkbox"/>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 본 R&D과제를 통해 공고일 6개월 (2023.9.13. 이후 채용) 이내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현금 인건비 24.7백만원 이내 산정이 가능함(지원금 1.5억당 1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인력) 인건비 한도 : 1인당 24.7백만원 ⇒ (기존인력) 인건비 한도 : 기업당 신규인력 인건비의 50%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산정 가능.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표] 해당하는 경우, 신규인력 24.7백만원 포함한 도지원금 70%이내 산정) ⇒ 선정 후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은 1회에 한정함 ○ 대학 및 출연연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한해 참여율을 10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계상 가능. 단,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인건비 현금계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한도 : 도지원금의 35% 이내 ○ 공통적용 : 급여총액에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하여 계상 <p><input type="checkbox"/> 학생연구원 인건비 (도지원금 35%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연구원 인건비 : 참여율 100%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 : 3,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석사과정 : 2,2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 학사과정 : 1,3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 보수비 산정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용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산정 불가 ○ 영리기관인 경우, 단일 물품(장비, 재료, 시제품 등)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장비, 시제품,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세 목	내 용
	<p>(협약 시 견적서 첨부 필요)</p> <p>* 사업 선정평가 이후 장비 구입비 편성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 및 재료 사용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구매예정내역 첨부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산정가능 <p>- 접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p>
연구활동비	<p>□ 연구활동비 (도지원금 30%이내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여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는 소속기관 자체기준에 의해 산정하며, 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 ○ 전문가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30만원/일 한도) - 자체 기준이 없을시 전북테크노파크 전문가활용비 산정 기준으로 지급 - 동일인에게 강사료 및 원고료 이중지급 불가 ○ 위탁정산수수료 : 회계법인의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로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 <p>[별표 2]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과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슬라이드제작비 등 - 접수조서, 구매물품 사진 구비 필수 ○ 과제와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등은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세미나·문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 경비는 불인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항목의 경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 ○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세 목	내 용
	<p>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편성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대 및 다과 : 30,000원 이내/인 X 참여인원 X 횟수 - 회의비 집행 증빙자료 필수 첨부(회의록, 서명록) <p>· (주관기관/참여기관)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산정불가</p>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수당 편성불가 · 참여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해당기관의 현금 인건비의 10%이내 산정 가능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공동운영경비 :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과제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비영리기관만 산정 가능) ⇒ 참여기관 도비지원금의 5% 이내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연도에 본과제와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참여기관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에서 참여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로 도비지원금의 40%를 초과 할 수 없음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R&D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제18조제5항3 관련)

□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계·소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디지털방송
	자동차/철도차량	안전도 향상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차량 지능화 기술		광역 통합망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홈네트워크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IT·S/W		RFID/USN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서버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SW 솔루션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System Integration
	조선/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IT·S/W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SW
	항공/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컴퓨터 그래픽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IT·S/W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지식정보보안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게임 및 u-러닝		
	청정생산 관련 IT·SW	ITS/텔레매틱스	정보보안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oC		물리보안		
	설계 Tool		융합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ITS/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섬유제품	섬유제품 관련 IT·SW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바이오·의료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공정기술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지능형 전력망-송전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지능형 전력망-배전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지능형 서비스-시장	
	의료정보표준화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원전 안전평가 기술				
				신원전 기술	

【별표 2】 정산수수료 표준 보수액

○ 정산수수료 표준보수액

구 분(사업비 규모)	표준보수액(천원)
5천만원 미만	624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4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284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704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64
※VAT 포함 금액	

※ 사업비 규모의 산정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의 합을 기준으로 함.
(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